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267호 2012. 5. 2. (수)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2-302호 하천수위감시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1
- 정선군공고 제2012-312호 병방치 경관 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 5
- 정선군공고 제2012-315호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안) 공고... 7
- 정선군공고 제2012-321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
- 정선군공고 제2012-323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 정선군공고 제2012-324호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18
- 정선군공고 제2012-326호 2012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19
- 정선군공고 제2012-33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8
- 정선군공고 제2012-331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8
- 정선군공고 제2012-33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3
- 정선군공고 제2012-339호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2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6,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 - 302호

하천수위감시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여름철 동강지역의 하천수위감시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12년 하천수위감시 CCTV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4. 17.

정 선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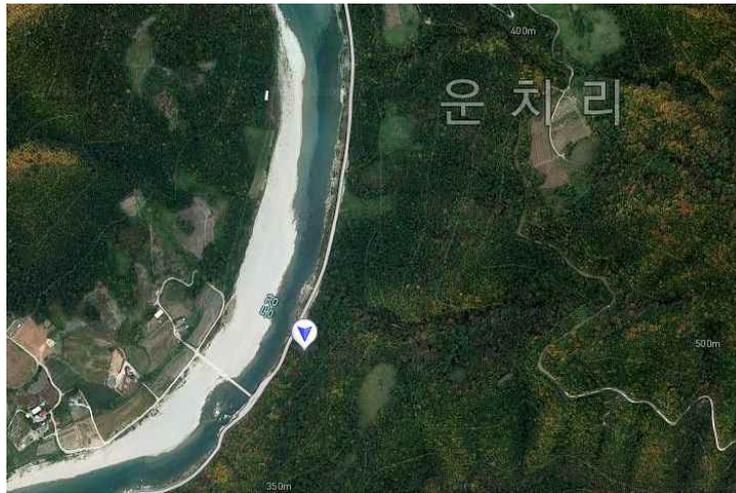
- 1. 사 업 명 : 2012년도 하천수위감시용 CCTV 설치 사업
- 2. 시 행 청 : 정선군
- 3. 공고기간 : 2012.04.17~05.06(20일간)
- 4. 의견제출 : 2010.04.17~05.06(20일간)
-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 6.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 7. 설치장소

연 번	설 치 장 소		비고
	위 치	세 부 장 소	
1	신동읍 운치리 28번지 일대	유지마을 건너편 도로 (1차 도로침수 지점 모니터링)	하천수위감시용
2	신동읍 운치리 1165 일대	수동마을 건너편 도로 (잠수교 모니터링)	하천수위감시용
3	신동읍 운치리 275 일대	점재마을 잠수교변 (잠수교 및 도로 모니터링)	하천수위감시용

8. 기타사항 : 여름철 예비특보이상 발령시 수위 모니터링 실시, 녹화기능없음

9. 위치도

가. 신동읍 운치리 275번지 일대(점재마을)



나. 신동읍 운치리 1165번지 일대(수동마을 건너편)



다. 신동읍 운치리 28번지 일대(유지마을 건너편)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건설방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팩스 : 033)560-259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1.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방재과(☎560-24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위감시용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예고(안)		수정제출(안)		사 유

하천수위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4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12 - 312호

병방치 경관 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

2012년도 병방치 경관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수취인 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2 년 04 월 18 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2012년도 병방치 경관 숲가꾸기사업
2. 사업내용 : 천연림개량,임내정리 등
3. 사업대상지 : 붙임 대상지 조서 참조
4. 사업기간 : 2012년 4월 ~ 2012년 5월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구두 또는 전화)
 -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사업추진
7.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산림정책과 산림조성팀(☎033-560-244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2012년도 병방치 경관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필지별 내역 1부. 끝.

2012년도병방치경관숲가꾸기대상지필지별내역

(단
위
:ha)

소재지				지적 (㎡)	대상면 적 (ha)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 번				주소	성명	
계			9필지	409,958	10.67			
정선	북실	산	99-1	123,438	3.70	경기도파주시평화로 강원도원주시지정면지정로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판교로 서울시구로구경인로	이*혁 김*도 정*엽 신*섭	
정선	북실	산	99-2	4,214	0.20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호로	이*희	
정선	북실	산	105	8,529	0.40	강원도정선군정선읍용탄리	고*균	
정선	북실	산	116	252,893	5.0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고*균	
정선	북실	산	117	15,868	1.2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오암길	김*조	
정선	북실	전	579-1	5,016	0.0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이*영	

정선군공고 제2012-315호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안) 공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2. 04. 20.

정 선 군 수

1. 기 간 : 2012. 04. 20 ~ 2012 .05. 03(14일)
2. 내 용 :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안)
3.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4. 의견제출 :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2. 05. 03일까지 도시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 문의처 : 정선군 도시건축과(☎ 033-560-2366, FAX 033-560-2174)

정선군 공고 제2012-321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정선군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를 규정함(제2조의 2)

나. 관리사무소 설치 규정을 마련함.(제2조의 3)

다. 다른 조례의 폐지 (부칙 제2조)

o.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우편번호 233-804)

- FAX제출 : 033-560-2056

- 문의전화 : 033-560-2330

붙임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3(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경제과장은”을 “도시건축과장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

명 칭	위 치	시설의 종류
병방산 군립공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광하리 쿨암리	1. 짚-와이어 시설 ○ 짚-와이어 탑승 및 하강장 ○ 스카이라운지 ○ 광장 및 주차장 2. 스카이워크 시설 ○ 전망시설 ○ 매표 및 관리소 ○ 주차장 ○ 화장실 3. 숙박시설 4. 교통운송시설(곤돌라) 5. 생태관찰 및 탐방로 6. 기타 편의시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조(구성) ①~② (생 략)</p> <p>③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 녹색환경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정책과장, <u>지역경제과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1.~3. (생 략)</p> <p>④~⑤ (생 략)</p>	<p><u>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u></p> <p><u>제2조의3(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u></p> <p>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도시건축과장</u> <u>은</u> ----- ----- -----.</p> <p>1.~3.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의4(군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지정된 군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 나.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 가. 삭제 <2003.4.4>
 - 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특별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323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정 선 군 수

1. 법적근거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가 폐지되어,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을
- 삭제 (제17조제1항제6호의5)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우편번호 233-804)

- FAX제출 : 033-560-2592

- 문의전화 : 033-560-2220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의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사업) ① (생 략) 1.~6의4. (생 략) <u>6의5.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 운영</u> 6의6.~8. (생 략)</p>	<p>제17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6의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의6.~8. (현행과 같음)</p>

정선군공고 제2012-324호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정 선 군 수

1. 201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10,303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 소재지의 대지면적과 건물연면적, 구조등 주택을 포함한 대지 일체의 가격을 공시

라. 열람방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 또는 개별주택소유자 개별 통지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선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와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선군공고 제2012-326호

2012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정선군은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공연예술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신청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2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 사업기간 : 2012. 5월 ~ 12월
- 사업내용 : 4개 분야 (연극, 무용, 음악, 국악분야) 공연예술
- 예산규모 : 14,400천원

2. 신청분야 및 문화활동 대상분야

- 신청분야 : 4개 분야의 대중적 공연예술
 - 연극(연극, 인형극, 마당극, 뮤지컬 등)
 -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등)
 - 국악(전통타악합주, 관현악, 실내악, 풍물놀이 등)
- 문화활동 대상분야
 - 지역주민, 어린이(오지마을 학교, 보호시설), 중소기업체 등
 - 청소년(학교, 보호시설 등),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학교 등)
 - 병동 프로그램(어린이, 정신병동 등) 및 교정시설(재소자) 등
 -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등

3. 지원규모 : 공연 1회당 300~400만원 지원 검토

※ 신청서상의 지원내역을 검토, 최종 지원액 결정

4.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 신청자격

- 지역내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강원도내 공연단체 대상 선정
 - ※ 우수 공연단체 유치를 위한 타시도 공연단체도 가능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소외시설 등에서 공연이 가능한 단체 등 기타

〈 신청 제외단체 〉

- 국·공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등

○ 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 신청자(공연단체, 공연기획사 등)의 사업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 공연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대중성
- 신청작품(프로그램)의 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 스텝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마케팅)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 시군 단위에서 공연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을 우선적으로 고려
- 치밀한 계획에 의해 사전 준비된 우수창작 공연물을 우선 고려

○ 심사방법

- 신청서류, 필요시 VTR테이프 및 CD, 기타 참고자료의 심사
- 장르별, 단체 및 공연내용 등을 고려, 공연 희망지역 및 공연횟수 조정

5.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2012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신청서 1부
- 필요시 공연내용물 비디오테이프 및 CD, 기타 참고자료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12. 5. 10. (직접 제출 또는 당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처 : 정선군 관광문화과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 ※ 담당자 김정서(Tel 033-560-2562. Fax 033-560-2593)

2012년 4월 일

정 선 군 수

2012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지원신청분야	연극, 무용, 음악, 국악 (해당분야에 0표)	2. 신청장르		
3. 신청사업명				
4. 기 간		5. 장 소		
6. 총소요액		7. 지원신청액		
8. 사업취지 및 목적				
9. 지 원 신 청 인	단 체 명	(직인)		
	우편번호/주소	□□□-□□		
	(전화번호)	☎(DDD:) - FAX(DDD:) -		
	대표자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인)		
	우편번호/주소	□□□-□□		
	(전화번호)	☎(DDD:) - FAX(DDD:) -		
	사무담당자명	(인) * 사무연락이 용이한 사람으로 기재함.		
	우편번호/주소	□□□-□□		
	(전화번호)	☎(DDD:) - FAX(DDD:) -		
	HP :			
단체현황	창립연도 : 년	총 인 원 : 명 (임원 명, 일반회원 명)		
10. 첨부서류 및 자료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일 경우 극작가 또는 작곡가 등 참여 확인서 - 창작이 아닌 경우 저작권 관련 계약서(1959년 이후 사망 또는 현존자의 저작물과 법인·단체의 저작물로서 공포된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대본, 시나리오, 악보, 총보, 비디오, 오디오, 팜플렛, 사진, 신문기사 등 				

※ 본 양식은 복사하시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P/C 또는 타자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정서하여 주십시오.

정 선 군 수 귀하

11. 세부사업계획	
<p>※ 심의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니 신청사업에 대하여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자료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A4 용지를 별지로 사용하여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 작품 개요 >

◎ 작 가

대본작가	성명		연출·안무	성명	
작곡가	성명				

※ 창작일 경우 작가나 작곡가 또는 연출·안무가 등 참여 확인서와 대본(시나리오, 악보, 총보 등) 등 증빙물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작품 주제 및 연출, 안무의도 : 핵심 개념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사용 가능)

[Empty box for writing the main theme and director/choreographer's intent]

◎ 작품 줄거리

※ 음악분야의 관현악,실내악,교성곡(국악분야는 관현악, 실내악, 전통타악합주)의 경우 악기편성,협연,독창,합창파트 구성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작품해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무용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몇 개의 장면과 막으로 구성되는지를 적고, 각 장면에서의 주요 개념, 정조, 분위기 등과 장면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Empty box for writing the plot]

12. 홍보계획

※ 공연작품소개,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3. 주요제작진 및 출연진

- ※ 역할란에는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 공연스텝, 중요 출연배역 순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 주요 스텝진 및 출연진 등의 참여 확인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 ※ 교향악단, 실내악단, 합창단, 전통타악합주단 등의 경우 악기 파트별, 성역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무용의 경우 비고란에 주요 무용수 활용계획(무용수의 중요한 이미지, 테크닉, 작품기여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인원이 많을 경우 주요 참가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인원 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명	역할	성별	연령	현직 및 소속	비고

1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조달방법란에는 예산항목별 소요예산을 국고지원금등(국고,지방비),문예진흥기금,자체자금, 동사업 수입금,협찬금,기타수입금으로 구분 기재하십시오(특히 국고 및 문예진흥기금 등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명확히 기재)			
예산항목	총소요액	산출근거	조달방법
합 계			
15. 연혁 및 활동실적 (최근3년간의 주요활동만 기재)			
※ 본 난은 그 동안의 단체활동실적을 통해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원본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 간	내 용		비 고
※ 작성란이 부족할 때에는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자료를 별도 첨부하십시오. 끝			

□ 지원신청서 각 항목별 기재방법

(번호는 지원신청서 양식 중 기재 항목에 부여된 번호와 동일함)

※ 작품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분야 : 연극,무용,음악,국악 분야 중 해당분야에 ○표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장르 : 앞의 지원대상에 각 분야별로 적시한 장르를 기재하는 난으로 무용의 경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중 해당장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사업명 : 지원신청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 예 : 0 0 0 공연
4. 기 간 : 실제 사업이 시작되는 일자부터 끝나는 일자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 예 : 2012. 5. 6 - 5. 17

※ 실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현지도착 일자나 사업이 끝난 후 마무리기간 등 세부 일정은 지원신청서 11번 세부사업계획 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5. 장 소 :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 예 : 원주 백운아트홀, 춘천문화예술회관

※ 사업이 지원신청 지방자치단체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되거나 여러 장소에서 분산되어 개최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를 11번 세부사업계획 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예(춘천지역에 신청경우): 2012. 5. 6 - 5. 7 : 춘천봄내극장

2012. 5. 8 - 5. 10 : 춘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6. 총소요액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 금액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7. 지원신청액 : 총 소요액 중 “2012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8.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본 난이 부족할 경우 11번 세부사업계획 난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9. 지원신청인

◎ 신청인이 ‘단체’일 경우 → 모든 난을 기입하시고 해당난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 직인 및 대표자 도장을 날인

※ 특히 ‘대표자’와 ‘사무담당자’가 다를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사무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대표자 = 사무담당자’일 경우는 사무담당자란에 “상

동(上同)"이라고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 단체 현황란은 단체의 규모를 알고자 하는 난이므로 창립년도와 단체구성, 인원수(임원, 회원)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회원이나 예술단원의 명단이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첨부서류 및 자료목록

- ◎ 지원신청자가 지원신청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첨부하는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 신청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신문,잡지에 게재된 기사내용 복사)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시·도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예술법인·단체 및 기획사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세부사업계획

- ◎ 지원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하는 난으로서, 작품 심사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오니 다음과 같이 필수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사업은 작품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12. 홍보계획

- ◎ 지원심사시 필요한 홍보계획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개발 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3. 주요제작진 및 출연진

- ◎ 주요제작진 및 출연진은 지원심사시 필요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심사 선정이후 단체가 출연자를 일방적으로 교체 할 경우, 지원금 교부·지원시 조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작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규모와 그 중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의 금액을 표기하는 난으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내역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며, 추측에 의한 산출근거는 작품심사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 ◎ 특히, "지원신청서" 총사업비와 심사선정 후 "교부신청서" 총사업비 차이가 많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업비 산정시 가급적 실제 소요되는 예산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신청자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확정할 경우, 지원액의 산정은 이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오니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조달방법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 소요액은 지원신청자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소요액 중 지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달방법란에 “국고지원금 등”, “문예진흥기금” 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고, 다른 단체나 업체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자체자금으로 부담할 금액은 아래의 작성예시와 같이 구분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예시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총소요액	산출근거	조달방법
대관료	5,000	1,000,000원×5일	국고지원금등(국고,지방비) 3,000 자체 2,000
인쇄비 (포스터) (전단) (팜플렛)	4,000 (1,000) (1,000) (2,000)	1,000원×1,000부 100원×10,000매 2,000원×10,000부	국고지원금등(국고,지방비) 2,000 문예진흥기금 2,000
공연제작비 (의상) (무대) (조명)	6,500 (1,500) (2,000) (3,000)	50,000원×30벌 2,000,000원×1식 3,000,000원×1식	국고지원금등(국고,지방비) 5,000 협찬 1,500
합 계	15,500		국고지원금등(국고,지방비) 10,000, 문예진흥기금 2,000 자체 2,000, 협찬 1,500

15. 연혁 및 활동실적

◎ 신청인이 ‘단체’일 경우 → 단체의 창립 등 연혁과 활동실적을 기재

※ 본 난은 그 동안의 단체활동실적을 통해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원본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2-33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4월 24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2018동계올림픽 한시기구 설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기구 및 인력 조정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568명
 - 집행기관 : 557명(현행과 같음)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 일반직 : 8급 25.0%(증 1.0%), 9급 8.0%(△1.0%)
 - 기능직 : 7급 20.5%(증 4%), 8급 15.0%(증 1.0%), 9급 59.5%(△5.0%)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별표 3)
 - 일반직 : 행정·시설 5급 증1명, 행정8급 증5명, 행정·환경8급 증1명, 행정·사회복지 8급 증1명, 행정8급 △1명, 환경8급 △1명, 시설9급 △1명, 행정6급·농촌지도사△1명, 농업6급·농촌지도사 △2 명
 - 기능직 : 기능7급 증3명, 기능9급 △8명
 - 연구·지도직 : 농촌지도사 증3명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0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참고사항

- 붙 임 : 1.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 추계서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3% 이내	<u>25% 이내</u>	<u>8% 이상</u>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 이내	<u>20.5% 이내</u>	<u>15.0% 이내</u>	<u>59.5% 이상</u>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u>90% 이상</u>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0% 이내	50% 이내	50% 이내	0% 이내	0%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568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u>453</u>	-				
3급	-					
4급	3		3			
5급	<u>25</u>	2	<u>11</u>	2	1	9
6급이하 계	<u>425</u>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계	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0	-				
연구사	4	-				
지도직 계	<u>20</u>	-				
지도관	2			2		
지도사	<u>18</u>	-				
기능직 계	<u>88</u>	-				

개정 전·후 대비표(별표)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7.0% 이내	33% 이내	25% (24%) 이내	80% (9.0%)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안은 개정 전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 이내	20.5% (16.5%)이내	15% (14%) 이내	59.5% 이상(64.5%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u>이상(이내)</u>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0% 이내	50% 이내	50% 이내	0%이내	0%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568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u>453(451)</u>	-				
3급	-					
4급	3		3			
5급	<u>25(24)</u>	2	<u>11(10)</u>	2	1	9
6급이하 계	<u>425(424)</u>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계	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0	-				
연구사	4	-				
지도직 계	<u>20(17)</u>	-				
지도관	2			2		
지도사	<u>18(15)</u>	-				
기능직 계	<u>88(93)</u>	-				

비 용 소 요 추 계 서

□ 관련조례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원의 변동 내역

○ 총 정 원 : 변동없음

○ 직 급 별

- 일반직(5급 중 1명, 8급 중5, 9급 △1명)

- 기능직(7급 중 3명, 9급 △8명)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원)
총 계	106,965	
본 봉	73,265	○ 본봉 : 73,264,800원 - 5급 3,698,600원× 1명× 12월 = 44,383,200원 - 8급 1,726,500원× 5명× 12월 = 103,590,000원 - 9급 1,367,100원× 1명× 12월 = 16,405,200원 - 기 7급 2,693,800원× 3명× 12월 = 96,976,800원 - 기 9급 1,617,500원× 8명× 12월 = 155,280,000원
상 여 금	6,105	○ 정근수당 : 6,105,400원 - 5급 3,698,600원×50%× 1명×2회 = 3,698,600원 - 8급 1,726,500원×50%× 5명×2회 = 8,632,500원 - 9급 1,367,100원×50%× 1명×2회 = 1,367,100원 - 기 7급 2,693,800원×50%× 3명×2회 = 8,081,400원 - 기 9급 1,617,500원×50%× 8명×2회 = 12,940,000원
수 당	1,509	○ 시간외 근무수당 : 1,508,760원 - 5급 11,002원 ×10시간× 1명×12월 = 1,320,240원 - 8급 7,609원 ×10시간× 5명×12월 = 4,565,400원 - 9급 6,878원 ×10시간× 1명×12월 = 825,360원 - 기 7급 8,476원 ×10시간× 3명×12월 = 3,051,360원 - 기 9급 6,878원 ×10시간× 8명×12월 = 6,602,880원
명절휴가비	7,326	○ 명절휴가비 : 7,326,480원 - 5급 3,698,600원×60%× 1명× 2회 = 4,438,320원 - 8급 1,726,500원×60%× 5명× 2회 = 10,359,000원 - 9급 1,367,100원×60%× 1명× 2회 = 1,640,520원 - 기 7급 2,693,800원×60%× 3명× 2회 = 9,697,680원 - 기 9급 1,617,500원×60%× 8명× 2회 = 15,528,000원

구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출근거(원)
연가보상비	2,656	○ 연가보상비 : 2,655,849원 - 5급 3,698,600원×2.9%×1명×15일 = 1,608,891원 - 8급 1,726,500원×2.9%×5명×15일 = 3,755,137원 - 9급 1,367,100원×2.9%×1명×15일 = 594,688원 - 기 7급 2,693,800원×2.9%×3명×15일 = 3,515,409원 - 기 9급 1,617,500원×2.9%×8명×15일 = 5,628,900원
직급보조비	3,000	○ 직급보조비 : 3,000,000원 - 5급 250,000원×1명×12월 = 3,000,000원 - 8급 105,000원×5명×12월 = 6,300,000원 - 9급 105,000원×1명×12월 = 1,260,000원 - 기 7급 140,000원×3명×12월 = 5,040,000원 - 기 9급 105,000원×8명×12월 = 10,080,000원
연금부담금	6,570	○ 연금부담금 : 6,570,290원 - 5급 58,449,251원×7%×1명 = 4,091,447원 - 8급 137,202,037원×7% = 9,604,142원 - 9급 22,092,868원×7%×1명 = 1,546,500원 - 기 7급 123,362,649원×7% = 8,845,385원 - 기 9급 206,059,780원×7% = 14,424,184원
	2,090	○ 보전금 : 2,089,809원 - 5급 58,449,251원×2.3%×1명 = 1,344,332원 - 8급 137,202,037원×2.3% = 3,155,646원 - 9급 22,092,868원×2.3%×1명 = 508,135원 - 기 7급 123,362,649원×2.3% = 2,837,340원 - 기 9급 206,059,780원×2.3% = 4,739,374원
	1,636	○ 퇴직수당부담금 : 1,635,502원 - 5급 58,449,251원×1.8%×1명 = 1,052,086원 - 8급 137,202,037원×1.8% = 2,469,636원 - 9급 22,092,868원×1.8%×1명 = 397,671원 - 기 7급 123,362,649원×1.8% = 2,220,527원 - 기 9급 206,059,780원×1.8% = 3,709,076원
	99	○ 재해보상부담금 : 98,862원 - 5급 58,449,251원×0.1%×1명 = 58,449원 - 8급 137,202,037원×0.1% = 137,202원 - 9급 22,092,868원×0.1%×1명 = 22,092원 - 기 7급 123,362,649원×0.1% = 123,362원 - 기 9급 206,059,780원×0.1% = 206,059원
국민건강보험금	2,544	○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 2,544,117원 - 5급 58,449,251원×2.8%×1명 = 1,636,579원 - 8급 137,202,037원×2.8% = 3,841,657원 - 9급 22,092,868원×2.8%×1명 = 618,600원 - 기 7급 123,362,649원×2.8% = 3,454,154원 - 기 9급 206,059,780원×2.8% = 5,769,673원
	165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 164,596원 - 5급 1,636,579원×6.6%×1명 = 102,470원 - 8급 3,841,657원×6.6% = 253,549원 - 9급 618,600원×6.6%×1명 = 38,499원 - 기 7급 3,454,154원×6.6% = 227,874원 - 기 9급 5,769,673원×6.6% = 380,798원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 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 331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4월 24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부서별 업무 기능에 보다 부합하도록 행정기구 명칭 변경 (안 제3조)
 - “녹색환경과” 를 “생태환경과” 로 명칭 변경
- 부서별 사무조정(안 제3조 제2항)
 - 관광문화과 사무중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 “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추진” , “건강생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을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 지원단” 에 이관
- 2018동계올림픽 준비 및 지원, 동계스포츠 등 체육진흥을 위해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 신설(안 제3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0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 1.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녹색환경과”를 “생태환경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추진”, “건강생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각각 삭제하고, “그밖의 관광, 문화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한시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동계올림픽 추진단을 둔다.

-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 및 대회 지원
-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대회시설 사업 지원
-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
-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추진
-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
- 그 밖의 동계올림픽·체육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녹색환경과” 를 “생태환경과” 로 한다.
- ②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 을 “생태환경과장” 으로 한다.
- ③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녹색환경과장” 을 “생태환경과장” 으로 한다.

- ④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녹색환경과장” 을 “생태환경과장” 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1.~5. (생 략) 6. 녹색환경과 ○ (생 략) 7. (생 략) 8. 관광문화과 ○ 관광·문화예술·체육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관광지 개발 및 운영 관리 ○ 관광사업 인·허가 처리 ○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보전 ○ 문화재 보호관리 ○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 <u>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u> ○ <u>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u> ○ <u>건강생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 <u>그밖의 관광, 문화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생태환경과 ○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관광문화과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삭 제> ○ <u>그 밖의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p> <p><u>제3조의3(한시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동계올림픽 추진단을 둔다.</u> ○ <u>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 및 대회 지원</u> ○ <u>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대회시설 사업 지원</u> ○ <u>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u> ○ <u>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추진</u> ○ <u>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u> ○ <u>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u> ○ <u>그 밖의 동계올림픽·체육에 관한 사항</u></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 33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4월 24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 연구·지도직 공무원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표준안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중 제1항제4호 “의사” 삭제 (안 제3조)

나.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일 변경 (안 제5조)

-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는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

다.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및 저소득층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2항, 안 제6조의2제3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함.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마. 응시결격사유 기준일 규정(안 7조제2항)

-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하고,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함.

- 바. 연구직·지도직 특별임용 응시자격으로 학위 소지 요건 폐지, 경력자 특별임용요건 추가(안 제9조, 10조, 14조)
- 사. “특별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조문 정비(안 제10, 제13조 등 10개조문)
- 아.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근거법령 변경(안 제11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16조로 변경
- 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시험 위원 확대(안 제12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위원수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 차. 언어장애인을 배려한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선(안 제13조)
 - 의사발표를 의사표현으로 변경
- 카.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조정(안 제13조의3제1항)
 -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3%이내를 1%이내로 축소
- 타. 고졸기능직 임용을 위한 임용예정직렬과 관련 학과근거 마련(안 제14조제5항)
- 파. 연구직 및 지도직의 전직요건 확대(안 제17조제1항)
 - 학력 제한 완화 차원에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전직요건에 추가
 - ※ (현행) 학력 → (개정) 학력 또는 자격증
- 하. 특별승진임용기준 확대(안 제25조)
 - 기존 특별승진임용기준을 삭제하고, 국정 및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등을 확대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0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참고사항

- 붙 임 : 1.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인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를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전에” 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5조의” 를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3항의” 을 “제27조제2항의” 으로 하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의사발표의” 를 “의사표현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을 “경력경쟁임용시험” 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특별임용시험의” 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으로 하고, “3퍼센트” 를 “1퍼센트”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의” 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에”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며,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

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제7항 중 “특별임용” 을 “경력경쟁임용” 으로 한다.

제14조제9항 중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5조의2 제목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을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 을 “경력경쟁임용” 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특별임용의 인원제한)”을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특별임용” 을 “경력경쟁임용” 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전직시험의 면제)”를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3호의”를 “제10조제3호의”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의2제2항 중 “제20조의”를 “제23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4,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쟁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농식품 개발	<u>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u>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u>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u>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u>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u>
환경연구	환 경	<u>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u>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u>(농촌생 화직류 제외)</u>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u>농촌생활</u>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 : 1. 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윗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u>보건진료</u>	<u>보건진료</u>	<u>조산사, 간호사</u>	<u>조산사, 간호사</u>	<u>조산사, 간호사</u>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
설 2006. 2. 15>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 계 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u>대한민국명장</u> , 기술사, 기능 장, 기사(6년), 기능명장(6년)	기사(2년), 산 업기사(4년), <u>기능명장(2년)</u>	기사, 산업기사 (2년), 기능사 (4년), <u>기능명 장, 국제기능올 림픽 입상자(2년)</u>	산업기사, 기능 사(2년), <u>국제 기능올림픽 입 상자, 전국기능 대회 입상자(2년)</u>	기능사, <u>전국기 능대회 입상자</u>	기능사, <u>지방기 능경기 입상자</u>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 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산	전산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조선	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야 금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잡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u>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u> 기 사 : <u>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u> 산업기사 : <u>종자, 식물보호, 산림, 임업종묘, 유기농업</u>
	축 산	기 술 사 : <u>축산, 식품</u> 기 사 : <u>축산, 식품</u> 산업기사 : <u>축산, 식품</u>
	생명유전	기 술 사 : <u>종자, 농화학, 식품</u> 기 사 : <u>종자, 식품, 생물공학</u> 산업기사 : <u>종자, 식품</u>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u>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u> 기 능 장 : <u>산림</u> 기 사 : <u>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u> 산업기사 : <u>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u>
	산림자원	기 술 사 : <u>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u> 기 능 장 : <u>산림</u> 기 사 : <u>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u> 산업기사 : <u>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u>
	산림보호	기 술 사 : <u>종자, 산림, 농화학</u> 기 능 장 : <u>산림</u> 기 사 : <u>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u> 산업기사 : <u>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u>
	산림이용	기 술 사 : <u>산림</u> 기 능 장 : <u>산림</u> 기 사 : <u>산림, 임산가공</u> 산업기사 : <u>산림, 임산가공</u>
	해양수산	기 술 사 : <u>해양, 수질관리</u> 기 사 : <u>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u> 산업기사 : <u>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u>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 술 사 : <u>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u> 기 사 : <u>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u> 산업기사 : <u>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u>
	수산제조	기 술 사 : <u>수산제조, 식품</u> 기 사 : <u>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u>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u>수산제조, 식품</u>
	수산증식	기 술 사 : <u>수산양식, 수질관리</u> 기 사 : <u>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u> 산업기사 : <u>수산양식, 수질환경</u>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어 로	<p>기 술 사 : <u>해양, 어로, 수질관리</u> 기 사 : <u>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u> 산업기사 : <u>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u></p>
	일반선박	<p>기 술 사 : <u>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u> 기 사 : <u>일반기계, 조선</u> 산업기사 : <u>컴퓨터응용가공, 조선</u></p>
	선박항해	<p>기 술 사 : <u>조선</u> 기 사 : <u>조선, 항로표지</u> 산업기사 : <u>조선, 항로표지</u></p>
	선박기관	<p>기 술 사 : <u>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u> 기 사 : <u>일반기계</u> 산업기사 : <u>컴퓨터응용가공</u></p>
	해양교통시 설	<p>기 술 사 : <u>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기 능 장 : <u>전기, 전자기기</u> 기 사 : <u>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u> 산업기사 : <u>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u></p>
보 건	보 건	<p>기 술 사 : <u>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u> 기 사 : <u>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u> 산업기사 : <u>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u></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 술 사 : <u>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u></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 술 사 : <u>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u> 기 사 : <u>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u> 산업기사 : <u>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u></p>
환 경	일반환경	<p>기 술 사 : <u>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u> 기 능 장 : <u>산림</u> 기 사 : <u>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u> 산업기사 : <u>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u></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시 설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통 신	통신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 산업기사 :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 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 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 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 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 의사(2)				
	치 무	치과 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직렬	직류				
전 기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u>선박항해</u>	<u>선박항해</u>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오물처리사 2급(2)
<u>조 리</u>	<u>조 리</u>		<u>조리사 1급(4)</u>	<u>조리사 1급(2)</u>	<u>조리사 1급</u> <u>조리사 2급(2)</u>
사무보조	위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 비 고 : 1.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직종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승강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제도,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기사(방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직류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 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 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 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 비, 가스, 품질경영, 기계설비,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 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u>농식품 개발</u>		<u>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u>	<u>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 (5)</u>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 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명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 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 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 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 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u>의공</u>)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 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 (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 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렬	직류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3급 정사서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금 속				
	야 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기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녹 지	조 경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환경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물검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디자인	<u>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u>	<u>기사(시간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u>	<u>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u>		
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비 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동,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 상담	전화 상담		기능사(정보기기운동)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	기계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립,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더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계급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직렬	직류		
기계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u>열관리</u>	<u>열관리</u>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u>선박</u> <u>항해</u>	<u>선박</u> <u>항해</u>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원예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u>위생</u>	<u>위생</u> <u>사역</u>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u>조리</u>	<u>조리</u>		
사무 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계리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준사서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비 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 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 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 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u>컴퓨터활용능력 1급</u>	1%	<u>워드프로세서1급,</u> <u>컴퓨터활용능력 2급</u>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물류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p>공 업</p>		<p>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p>기계운전</p>	<p>기술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조 선</p>	<p>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p>일반전기</p>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p>	

공 업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p>	<p>기사자격증 간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 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 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야 금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일반 화공	섬 유	<p>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 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공 업	자 원	<p>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p> <p>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p>
	잡 업	<p>기사: 생물공학</p> <p>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식물검역	<p>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p> <p>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p> <p>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p> <p>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농 화 학	<p>기술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축 산	<p>기술사: 축산, 식품</p> <p>기사: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축산,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p>
	생명유전	<p>기술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p> <p>기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p> <p>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 가 산 비율적용: 방 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p>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수 산 물 검 사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p>해양수산</p>	<p>어 로</p>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p>	
	<p>해양교통 시 설</p>	<p>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p>	
<p>보 건</p>	<p>보 건</p>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 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 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 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 취급 감독자, 응급구조 사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 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 생사, 영양사, 응급 구조사2급, 보건 교육사2급 기능직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보건교육사3급</p>
<p>식품위생</p>	<p>식품위생</p>	<p>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p>의료기술</p>	<p>의료기술</p>	<p>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p>	<p>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의 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응급구조 사1급</p>
		<p>- 85 -</p>	

의료기술	의료기술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임 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 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의 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가수질)</p> <p>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p>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p> <p>기사자격 증가산 비율 적용:환경 측정분석사 (수질)</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p> <p>기사자격 증가산 비율 적용:환경 측정분석사 (대기)</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p>

<p>시 설</p>	<p>도시계획</p>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p>일반토목</p>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p>농업토목</p>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p>건 축</p>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p>측 지</p>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시 설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설 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 술 사 : <u>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u></p> <p>기 사 : <u>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u></p> <p>산업기사 : <u>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u></p> <p>기 능 사 : <u>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u></p>	
<u>방송통신</u>	통 신 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촌지도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기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	
	전자	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p>공업연구</p>	<p>금 속</p>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p>섬 유</p>	<p>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p>화 공 화 학</p>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p>	
	<p>산업경영</p>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p>	
<p>농업 연구</p>	<p>농식품 개발</p>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자격증 기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p>
<p>농업연구 농촌지도</p>	<p>작 물 농 업</p>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가 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 사</p>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농촌지도	원 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근축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공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농 공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p> <p>농업기계,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농촌지도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특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녹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p>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p>산업기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p>기능사 : 축산</p>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수산자원	<p>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p>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p>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p> <p>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p> <p>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수산양식</p>	
	수산공학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p>기능사 : 어로</p>	
	수산가공	<p>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p> <p>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p> <p>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p> <p>기능사 : 수산식품가공</p>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u>의공</u></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u>의공</u></p> <p>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 1급</p> <p>임상심리사 2급</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u>치과의사</u>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p>
환경연구	환 경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p>
환경연구	환 경	<p>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p>농촌지도</p>	<p>농업토목</p>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p>환경연구</p>	<p>환 경</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시설연구</p>	<p>토 목</p>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p>농촌지도</p>	<p>농업토목</p>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p>시설연구</p>	<p>건 축</p>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2급· 지도관 <u>연구관</u>	3급· 지도관 <u>연구관</u>	4급· 지도관 <u>연구관</u>	5급· 지도관 <u>연구관</u>	6급· 기능직 6급 이상· 지도사 <u>연구사</u>	7급· 기능직 7급 이상· 지도사 <u>연구사</u>	8급· 기능직 8급	9급· 기능직 9급 이하
직무분야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정 방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준 위 위사	상 중 사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교육공무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관 사 · 검 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이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사 학 위 소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 련 직 무 분 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u>3년</u>	<u>3년</u>

- 비 고 : 1. 위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4조제5항 관련)

1. 연구직 및 지도직 외의 기술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해양
	일반수산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축 지	토목(토목건설)
<u>방송통신</u>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u>농 촌 지 도</u>	<u>농업계통(수의학포함)</u> <u>식품가공, 농가정,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주생활</u>
<u>어 촌 지 도</u>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계	급	2급	3급	4급
연	구	10년	8년	4년
경	력			

비 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계	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연	구	8년	4년
경	력		

비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제17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전 기		기 계 운 전
			일 반 전 기
	전 차		전 차
			금 속
	금 속		야 금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업환경	농 촌 지 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화 학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식 물 검 역
	농업경영	농 촌 지 도	농 업
			일반농업
		농 촌 지 도	농 업
	잠업곤충	농 촌 지 도	잠 업
			잠 업
	원 예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 촌 지 도	농 업
원 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생활	농업 <u>농촌지도</u>	일반농업
			농촌사회
			<u>농촌생활</u>
	축산	농업 농촌지도	축산
			축산
	농공	공업 시설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 조경	임업 농촌지도	전직류
			임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해양수산 어촌지도	수질
			일반수산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어촌지도	일반수산
			어촌
	수산양식	해양수산 어촌지도	수산중식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촌지도	어로
			어촌
	수산가공	해양수산 어촌지도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어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어촌지도	일반수산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약무	
공중보건	보건	보건	보건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경	환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목 건축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렬	직	류			
		류						
농촌지도	농	업	농	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	업	녹지	전	직	류
					녹지연구	임	업	
						조경		
			잠	업	농	업	잠업	
					농업연구	잠업	곤충	
			원	예	농업연구	원	예	
			축	산	농업	축	산	
					농업연구	축산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수의연구	수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공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공				
	농업토목		시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공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중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	전	직	류		

[별표 15]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운할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업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업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향료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향료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계,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 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 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u>방송통신</u>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u>방송통신</u>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 업 연 구 (잡업근층)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u>농업연구 (농식품 개발)</u>	<u>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u> <u>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u> <u>영양사, 위생사</u>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보 건 연 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성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 경 연 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시 설 연 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 설 연 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u>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u>)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u>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u>)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u>위생사, 영양사</u> ,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기능직

구분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토 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 신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p>화 공</p>	<p>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p>	<p>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가 스</p>	<p>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p>	<p>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p>
<p>선 박 기 관</p>	<p>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p>	<p>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p>
<p>농 립</p>	<p>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p>	<p>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p>
<p>보 건</p>	<p>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p>
<p>위 생</p>	<p>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p>	<p>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p>

비고: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지 제7호서식] <11.12.8>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계	직명	
	요구					직류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계	직명	
	한자					직류	
⑦ 선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 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 시행 제 회 1차 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명 성	
위와같이 요구함.						계 인	(사진) (3.5cm×4.5cm)
년 월 일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인)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인	(사진)	
년 시행 제 회 시험 임용예정직명 : (급 류)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인)						위 요구서에 첨부하 는 것과 동일한 원 판, 동일한 규격	

1203-1-1A
1978. 10. 13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 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란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 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1.~3. (생략) 4. 의사 5. (생략) ②(생략)</p>	<p>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입용예 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 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인 때에는 시 험 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 -----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전에 ----- ----- ----- -----.</p>
<p>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 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 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1.~3. (생략) <신설></p>	<p>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 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 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 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 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 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 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 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 기 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 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 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p> <p>③ (생 략)</p> <p>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 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 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p> <p>1. 삭제<2008.09.30></p> <p>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조,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p>	<p><u>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 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 야 한다.</u></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p> <p>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 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 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가. <u>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u></p> <p>나. <u>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u></p> <p>다. <u>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u></p> <p>라. <u>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u></p> <p>3. <u>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 직시험</u></p> <p>가. <u>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u></p> <p>나. <u>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u></p>	
<p>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u>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u>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 ----- <u>제14조 제6항 및 제15조의</u>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경력 경쟁임용시험</u>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u></p> <p>2. <u>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u></p> <p><u><단서 신설></u></p> <p>3. (생략)</p> <p>⑤ (생략)</p> <p>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u>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u></p> <p>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u>특별임용</u>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p> <p>⑧(생략)</p>	<p>⑤ ----- ----- ----- ----- <u>경력경쟁임용</u> ----- ----- -----.</p> <p>1. <u>경력경쟁임용</u> ----- ----- <u>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u>----- -----.</p> <p>2. ----- ----- -----.</p> <p><u>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u>경력경쟁임용 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p> <p>⑦ ----- ----- ----- <u>경력경쟁임용</u> ----- -----.</p> <p>⑧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신 설></p> <p>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p> <p>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 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p> <p>③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p> <p>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p>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p> <p>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 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 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p>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을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p> <p>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 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p> <p>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 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 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 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p> <p>제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 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 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현 행	개 정 안
<p>3. <u>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u></p> <p>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p> <p>① (생 략)</p> <p>② 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p> <p>③ (생 략)</p> <p>1. (생 략)</p> <p>2. (생 략)</p> <p>3. <u>동일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u></p> <p>4. (생 략)</p> <p>④ (생 략)</p> <p>1.~3. (생 략)</p>	<p>3. <u>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u></p> <p>4. <u>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u></p> <p>5. <u>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u></p> <p>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제23조의 ----- -----.</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339호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예우는 받고 있으나,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매월 보훈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관련법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제9조, 제11조,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주민생활지원과)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FAX 제출 : 033-560-2588 - 문의전화 : 033-560-2314

붙임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호국보훈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국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규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전상군경(戰傷軍警)
 - 나. 공상군경(公傷軍警)
 - 다.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 라.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2. “미망인”이란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미망인에게는 나이제한 기준을 두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3.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호국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수당으로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미망인에 승계한다.
2. 호국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③ 군수는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지급) ①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나이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③ 사망위로금은 호국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망위로금의 지급은 호국보훈대상자의 경우에 적용하며, 미망인의 사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의 중단) ① 수당은 호국보훈대상자나 그 미망인의 사망, 타 시·군·자치구로의 전출, 제3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 신고 이후 다시 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읍·면장은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지급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사망위로금은 호국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 관내 주소지(주민등록)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3. (생략)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轉役)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생략)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을 받은 자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2

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5.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